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311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말소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311267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243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변론 종결2024. 3. 6.

판결 선고2024. 4. 3.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2432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1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10,155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8. 11. 접수 제2495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9. 1. 23. 접수 제1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자.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피고는 2021. 8. 11.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의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정기간 그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PF 대출을 추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는 업체들과 사이에 G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1. 8. 20.까지 원고의 PF 대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G은 피고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합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돈의 지급기한을 2021. 8. 20.까지로 연장하고, 원고가 G에게 위임하여

2021. 8. 20.까지 PF 대출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는 G과 결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더 비싸게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합의를 어기고 2021. 8. 20.이 도래하기 전인 2021. 8. 1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금액 71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써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승소한 등기관리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승소한 등기관리자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이유나 절차적 하자에 기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확정판결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실체적 이유나 절차적 하자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닌 이상 그 회복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세진

판사김래니

판사정세영